

의안번호	2201638
의 퇴 인	최은석의원
회 답 일	2024. 9.13.
추 계 번호	24D1695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등이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35억 4,900만원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177억 4,700만원(연평균 35억 4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장제보조비 지원 (안 제68조의4 신설)	3,549	3,549	3,549	3,549	3,549	17,747	3,54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8조의4 신설(장제보조비 지원 등)	국가유공자, 그 유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으며,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함	재량규정
2	안 제83조제2항 신설(위임 및 위탁)	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의2제1항 ¹⁾ 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- 1) 이 법 제44조의2(심리적 재활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,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이 법 시행령 제67조의2(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)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
2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
3.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
4.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8조의4 신설(장제 보조비 지원 등)	○	
2	안 제83조제2항 신설(위임 및 위탁)	×	미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는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, 개정안은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의 위탁 가능기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장제보조비 지원(안 제68조의4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등이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(현황) 국가보훈부의 ‘국립묘지 외 묘소관리 지원’ 사업의 내역사업인 ‘장제보조비’ 사업에서는 6·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지 아니한 경우²⁾,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,

2024년 예산은 4억 4,200만원(2,210명×20만원)임

- (대상자)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사망자 수는 아래와 같이 뚜렷한 증감추세가 없어 최근 5년간 평균값인 17,747명에 국립묘지등 안장대상자를 제외하여 대상자 산출
 - 개정안에서는 국립묘지 또는 묘지(이하 “국립묘지등”)에 안장하는 경우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자에 국립묘지 등 안장대상자를 차감하여 산출
 - 국립묘지등 안장대상자는 최근 5년간 국립현충원 및 국립호국원 안장률 평균인 48.89%³⁾를 적용하여 산출

[표 2]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사망인원 현황: 2019~2023년

(단위: 명)

	2019	2020	2021	2022	2023	합계	연평균
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인원	16,561	16,492	16,758	20,755	18,171	88,737	17,747

자료: 국가보훈부

[표 3]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자 중 개정안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정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
사망인원(명, A)	17,747	17,747	17,747	17,747	17,747
국립묘지등 안장률(% , B)	48.89	48.89	48.89	48.89	48.89
대상자(명, $A \times (1-B)$)	9,071	9,071	9,071	9,071	9,07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지원단가) 장제보조비 지급단가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사업 상의 단가인 20만원을 적용하며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
- (추가재정소요) 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결과 향후 5년간 177억원으로 추정

2)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하거나 안치하지 아니한 경우

3) 국립현충원 및 국립호국원 안장률: 2019~2023년

	2019	2020	2021	2022	2023	평균
사망인원(명, A)	15,749	26,341	20,534	25,550	23,435	22,322
안장인원(명, B)	8,984	11,382	10,814	12,453	10,026	10,732
안장률(% , B/A)	57.0%	43.2%	52.7%	48.7%	42.8%	48.89%

자료: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

[표 3]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 대한 장제보조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사망자(명, A)	9,071	9,071	9,071	9,071	9,071	
장제보조비(만원, B)	20	20	20	20	20	
소요비용(백만원, A×B)	3,549	3,549	3,549	3,549	3,549	17,74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